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76 발의연월일: 2020. 11. 10.

발 의 자:이형석·주철현·허 영

안규백 · 임호선 · 이용빈

송옥주 · 이병훈 · 양기대

진성준 · 맹성규 · 홍익표

이광재 • 한병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와 지방세 모두 헌법에 규정된 조세로 체납에 대한 제재도 같은 체계로 적용돼야 함에도 국세의 경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수단을 적용하지만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하기 때문에 전국 합산이 아니라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행정도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국세와 같은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에 한계가 있으며, 전국적 세원인 부가가치세를 토대로 하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는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담당하고 지방소득세에 대한 불복도 동시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전문성과 효율성 확보 등에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처

리할 수 있도록 하되,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함(안 제1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169호) 및「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5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소속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86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 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 조제5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 우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 전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35조제2항제3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조례로"를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관련 규정(規程)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으로 한다.

제147조의 제목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으로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

원회"라 한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4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본다.

제147조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위원회"를 각각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 의위원회"로 한다.

제1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 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 및 제135조의 개정규정은 20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위탁 ·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 | 위탁 · 위임 등) ① -----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서 같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단체의 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 또는 제151조의2에 따라 설립 할 수 있다. 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 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이 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거나 위 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 세조합장-----소속 공무원 게 재위임할 수 있다. (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지 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 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u>중앙행정기</u>관의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 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은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86조(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 전 은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 세관계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1. ~ 3. (생 략)
- 4. <u>지방자치단체</u> 간에 지방세의 부과·징수, 조세쟁송, 조세범 소추, 세무조사 또는 질문·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
· 비르 레10054는 키비제키보비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세86조(비밀유지)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조합

5. ~ 8. (생략) <신 설>

9. (생략)

- ②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1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 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 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및 제6호부터 제9호까 지의 경우에 과세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하 여야 한다.
- 1. ~ 3. (생 략)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생략)

일부개정법률

5.	\sim	8.	(현행과	같음)
\circ		O.	\ \(\(\) \(\) \(\)	

- 9.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징 수법」 제8조, 제9조, 제11조 및 제71조제5항에 따른 업무 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세정 보를 요구하는 경우
- 10. (현행 제9호와 같음)

2							
				<u>></u>	세10	<u>ই</u>	
			-	해당	ス	방지	<u> 치</u>
<u>단</u>	체의	장	또는	지병	방세?	조합	<u>장</u> -

- 1. ~ 3.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35조(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세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 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전 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송달 등 납세편의를 위하여 지방세통합 정보통신망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 2. (생략)
- 3.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필요로 하는 지방세 부과·징수, 조세쟁송, 세무조사, 체납확인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 ③ ~ ④ (생 략)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

<u>방세조합장</u>
②
1. ~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
3. <u>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u> <u>방세조합장</u>
방세조합장
<u>방세조합장</u> ③ ~ ④ (현행과 같음)
<u>방세조합장</u> ③ ~ ④ (현행과 같음)
<u>방세조합장</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방세조합장 3 ~ ④ (현행과 같음) 5 지방자치단체의

여야 한다.

-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u>지방</u> 기 <u>자치단체의 장</u>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 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1. ~ 4. (생 략)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u>지방</u>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② ~ ⑦ (생 략)
 - ⑧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 레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

<u>합장</u> .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u>지방</u>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
<u>합장</u>
1. ~ 4. (현행과 같음)
5
기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
<u> 조합장</u>
② ~ ⑦ (현행과 같음)
8
<u>조</u>
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61
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
程)으로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
세조합장
<u>게 工 日 0</u>

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 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 ② <u>위원회</u>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 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u>.</u>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 운영) ①
지방세심
의위원회
<u>.</u>
②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
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
하여 지방세조합에 지방세징수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1항제6호 중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지방세조합장"으로
<u>본다.</u>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
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
<u> 징수심의위원회</u>
④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
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지방세
<u> 징수심의위원회</u>
제151조의2(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

체조합의 설립) ①지방세의 납부, 체납, 징수, 불복 등 지방세 관련 사무 중 복수의 지방자기단체에 걸쳐 있어서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지방자기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다.

② 그 밖에 지방세조합의 설립 절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